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4학년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7인	2인

Ⅰ. 회의일시 : 2025년 02월 07일(금요일)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01월 24일 서면통보)

Ⅱ. 장 소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의실(대진대학교 본관 3층)

Ⅲ.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사(7 인) : 윤은도, 박광훈, 이태열, 김화옥, 김욱, 조태형, 백학문
- 감 사(2 인) : 노기팔, 윤갑중

○결석임원

- 이 사(0 인) : 없음
- 감 사(0 인) : 없음

○참석직원 : 임춘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간사)

Ⅳ. 부의안건

1. 2024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
2.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교직원 급여 책정 안
3. 2025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본예산 편성 안
4.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
5.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
6.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보장 승진 임용 안
7.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승진 임용 안
8.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9. 대진대학교 2025.03.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10. 학교법인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안
11.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12.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간서명	김 욱	백 광훈	노 기팔

13.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임 교원 임용 안
14.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과목 변경 안
15.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정년퇴직 · 명예퇴직) 안
16.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파견 복귀 안
17.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계획 안
18.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임용 안
19.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징계의결요구안 및 징계위원 구성안

Ⅴ. 회의내용

윤은도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의 의안으로 '2024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2024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 다 음 -

● 1.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8,317,830,000원(일백팔십삼억일천칠백팔십삼만원)

2. 대진대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16,546,649,000원(일천일백육십오억사천육백육십사만구천원)
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60,279,877,000원(육백이억칠천구백팔십칠만칠천원)
비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56,266,772,000원(오백육십이억육천육백칠십칠만이천원)

3. 대진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2,911,520,000원(일백이십구억일천일백오십이만원)

4. 대진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1,700,995,000원(일백일십칠억구십구만오천원)

5. 분당대진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0,817,031,000원(일백팔억일천칠백삼만일천원)

6. 일산대진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1,034,398,000원(일백일십억삼천사백삼십구만팔천원)

7.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9,391,836,000원(구십삼억구천일백팔십삼만육천원)

8.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2024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10,344,444,000원(일백삼억사천사백사십사만사천원)

- 이 상 -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으로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교직원 급여 책정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백학문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백학문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간서명	김욱	백학문	노기팔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의 의안인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교직원 급여 책정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으로 '2025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본예산 편성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3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의 의안인 '2025학년도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 본예산 편성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1.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각각 23,734,703,000원(이백삼십칠억삼천사백칠십만삼천원)

2.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110,707,510,000원(일천일백칠억칠백오십일만원)
   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63,977,112,000원(육백삼십구억칠천칠백일십일만이천원)
   비등록금회계는 세입, 세출
   각각 46,730,398,000원(사백육십칠억삼천삼십구만팔천원)
3. 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7,558,182,000원(칠십오억오천팔백일십팔만이천원)
4. 대진여자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8,922,948,000원(팔십구억이천이백구십사만팔천원)
5. 분당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8,766,727,000원(팔십칠억육천육백칠십이만칠천원)
6. 일산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9,388,520,000원(구십삼억팔천팔백오십이만원)
7.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7,323,814,000원(칠십삼억이천삼백팔십일만사천원)
8.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2025학년도 본예산액은 세입, 세출
   각각 8,532,382,000원(팔십오억삼천이백삼십팔만이천원)

- 이 상 -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이태열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4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간서명	김 육	박 광 훈	노 기 팔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보장 승진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임춘환 간사 :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백학문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백학문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보장 승진 임용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7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승진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7호의 의안은 대진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승진 임용 대상자가 없어 제청하지 않아 의결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다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시 재 논의 할 것을 제안하다.

김　욱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8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제안하고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8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9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03.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9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백학문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9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백학문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9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03.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0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0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1. 교육용 처분대상 토지(포천시 설운동)

간서명	김 욱	백 학문	노 기 팔

- 처분사유 :

- 처분 후 사용 용도

2. 수익용 처분대상 토지(양주시 덕계동)

- 처분사유 :

- 처분 후 사용 용도 :

- 이상 -

윤은도 이사장 : 제11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은	노 기 팔

임춘환 간사 : 제1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백학문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1호 의안에 대하여 백학문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1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1. 학교법인대진대학교 법인사무국 오
신 을 팀장으로 보직승진함.

2. 법인사무국 오 을 대진대학교 총무팀으로 전보함. 단, 2025.08.31.까지 법인사무국 관리업무를 겸함.

- 이상 2명(임용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2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윤은도 이사장 : 제12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2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대진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일반직 8급으로 이　　을,
대진대학교 정보운영팀 일반직 9급으로 박　　을 신규 임용함.

- 이상 1명(임용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3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임 교원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백학문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3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백학문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3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임 교원 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교원(과목:역사)으로 고[redacted] 을 신규 임용 함.

- 이상 1명(임용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4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과목 변경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4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4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과목 변경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 다 음 -

● 대진여자고등학교 교원 양 을 지리에서 진로진학상담으로 과목 변경 함.

- 이상 1명(임용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5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정년퇴직 · 명예퇴직)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백학문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5호 의안에 대하여 백학문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5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정년퇴직 · 명예퇴직)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6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파견 복귀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6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6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파견 복귀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대진여자고등학교 교원 김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육연수부에서 파견 복귀함.

- 이상 1명(복귀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7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계획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7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7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7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 임용 계획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8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학교법인 정관 제30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의장에서 나가다)
(박광훈 이사 퇴실함)

이태열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8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박광훈 이사 입실함)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 다 음 -

● 1. 대진디자인고등학교 김 을 일반직(교육행정)6급에서 일반직(교육행정) 5급으로 일반승진함.

2. 대진고등학교 빅 을 대진디자인고등학교 회계부장으로 보직 임명함.

- 이상 2명(임용일:2025.03.01.) -

윤은도 이사장 : 제19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징계의결요구안 및 징계위원 구성 안'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임춘환 간사 : 제19호의 의안 중 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에 동의하다.

박광훈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9호 의안 중 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찰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단, 개인정보보호와 확정된 징계사안이 아니므로 붙임은 비공개처리한다.

임춘환 간사 : 제19호의 의안 중 징계위원회 구성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법인 대진대학교 이태열 이사, 박광훈 이사, 백학문 이사를, 외부위원으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안영림을,

으로 추천하다.

김 욱 이사 : 추천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제19호 의안 중 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추천하고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9호의 의안 중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철

● 학교법인 이사 : 이태열 이사, 박광훈 이사, 백학문 이사
외부위원 :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안영림
:

– 이상 9명 –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 선임(안)입니다.

이태열 이사 :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김욱 이사, 백학문 이사, 노기팔 감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윤은도 이사장 : 이사회의록 대표임원으로 김욱 이사, 백학문 이사, 노기팔 감사로 선임할 것을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7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윤은도 이사장, 박광훈 이사, 이태열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백학문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윤은도 이사장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김욱 이사, 백학문 이사, 노기팔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윤은도 이사장 :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1:4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 사 장 윤 은 도

이 사 박 광 훈

이 사 이 태 열

이 사 김 화 옥

이 사 김 옥

이 사 조 태 형

이 사 백 학 문

감 사 윤 갑 중

감 사 노 기 팔

2025학년도 대진대학교 교직원 급여책정

1. 급여 책정

○ 2025학년도 교직원 급여는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공무원 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일부 인상함

○ 교직원 급여 책정표

구 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안)
전임교원	3% 인상	4% 인상
비전임교원	일부 인상	4% 인상*
정규직원	3% 인상	4% 인상
계약직원/조교	3% 인상	4% 인상

* 비전임교원 : 객원 및 석좌교수 제외

2. 주요 변경 사항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연봉 4% 인상

○ 「교직원 호봉표 및 제수당표」 참조

○ 「2025학년도 신규계약 및 재계약 전임교원 급여표」 참조

○ 기능직 직원의 호봉표 32호봉 기준을 31호봉과 급간 37,000원 차등 지급

(※ 기능직 직원의 호봉 연차적으로 35호봉까지 등급별 구간 차등 지급 예정)

▣ 교직원 제수당

○ 야간근무수당은 월 78,8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인상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봉 4% 인상

▣ 계약제 외국인 전임교원 연봉 4% 인상

▣ 비전임교원 연봉 조정

○ 초빙교원, 겸임교원 연봉 4% 인상

○ 객원교원 및 석좌교수 연봉 변경 없음

간 서 명	김 욱	백 학 순	노 기 팔

▣ 학사/실습조교 급여 조정

○ 연봉 4% 인상(2025년 최저임금 상승분 포함)

▣ 계약직원 급여 조정

○ 일반행정 계약직원 연봉 4% 인상(2025년 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 기타 특수직무에 따라 별도의 연봉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계약직원의 연봉은 변경 없으며, 재계약 시 연봉 재협상에 의해 별도 연봉 책정

간 서 명	김 숙	백 학 문	노 기 팔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규정 제정

스마트지역혁신연구소 규정

스마트지역혁신연구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주도 혁신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 대학혁신지원체계 등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산학연 공동 학술활동/연구 및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대진대학교 부설 스마트지역혁신연구소라 칭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대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 연구용역 및 과제 수행
2. 경기북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혁신방법론' 개발, 보급
3.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관련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4.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화, 표준화 사업지원
5. 산하 연구회 운영을 통한 지역 발전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포럼 등 행사 운영
6. 학교 및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연구활동 수행

제 2 장 조 직

제5조(기구)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 분야 별로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연구위원(내,외부) : 약간명
3. 간 사 : 1명
4. 운영위원 : 10명 내외
5. 연구실장 : 3명 이내

제7조(임원의 임무, 임명, 임기)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간 서 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를 관장하며, 운영위원들의 제청을 받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내부 연구위원)과 사업참여를 통해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로서 교외 인사 중 지역발전과 관련된 단체, 기업의 간부나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외부 연구위원)로 구성되며,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전임교원 또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의 세부 사항을 논의 의결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은 연구실장을 겸할 수 있다.

⑤ 연구실장은 박사 학위 이상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소원) ① 소원은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원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박사과정 재학 이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연구실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등의 능력을 갖춘 실무경력자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조교 중에서 간사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사무원은 연구소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원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경비에서 지급한다.

제9조(일반회원) ① 연구소는 교내/교외에 있는 일반인들로서 지역발전과 연구에 관심과 참여 의향을 가진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일반회원은 연구소에서 행하는 강연, 세미나, 벤치마킹 등 행사에 초대되며 연구소의 발간물을 받는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평가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시행 세칙 안 의결
4. 예산 및 결산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장 및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매 학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 서 명	김 ○	백 ○ 문	노 ○ 팔

제 3 장 재 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 회원사 운영 지원비
2. 외부 수탁연구비
3. 본 대학교의 연구 보조비
4. 연구소원 및 회원의 회비
5. 사업수익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

제12조(예산· 결산) 연구소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각각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연구비관리)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는 본 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감사)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 할 경우 그 재산은 대진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행정지원) ① 연구소는 매 학년초에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학년말에 산학협력단에 연구활동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의 업무지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간 서 명	김 욱	백 학 운	노 기 팔

규정 개정

학칙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선택과목 : 타 학과(전공) 전공과목, **군사학, 현장실습과목,** 창업현장실습과목, 창업실습과목 <개정 2025.03.01.>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이수학점을 **1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5.03.01.>

②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인 복수학위생은 매 학기 일반학생의 최대 이수학점보다 **2학점을** 더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제34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 이라 한다.), 현장실습수업, 집중수업 및 사회봉사, **이동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격수업, 현장실습, **이동수업**, 실습학기제, 집중이수제 및 사회봉사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1.>

제39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졸업 학기에 그 성적을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간 서 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제43조(수료 인정학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 2학년 : 63학점 이상 **(소속전공 12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25.03.01.>

3. 제 3학년 : 95학점 이상 **(소속전공 12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25.03.01.>

4. 제 4학년 : 126학점 이상 **(소속전공 12학점 이상 포함)** <개정 2025.03.01.>

제45조(학위수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에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을** 표시한다. <개정 2025.03.01.>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33조 및 제43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① (수료 인정학점) 제43조와 관련하여 2021~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의 각 학년 수료학점은 1학년 32학점, 2학년 63학점, 3학년 95학점, 4학년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모집단위 및 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 이전 다음 각 항의 학과(전공)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모집단위 및 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별 학부,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회복지학전공' 은 '사회복지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심리교육전공' 은 '아동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의생명과학전공' 은 '의생명과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건축공학전공' 은 '건축공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산업경영공학과' 는 '데이터경영산업공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순	노 기 팔

<별표 2>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단과대학	학과(부)	학위명	비고
대순종학대학	대순종학과	문학사	
인문예술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학사	
	문예콘텐츠창작학과	문학사	
	현대미술전공	**미술학사**	
	만화게임그래픽전공	**미술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영화영상학과	연극영화학사	
	연기예술학과	연극영화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사**	재신설
글로벌산업통상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경제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국제통상학과	통상학사	
	국제학부	국제지역학사	
공공인재대학	공공인재법학과	법학사	
	행정정보학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사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사	
보건과학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학사	
	의생명과학과	**이학사**	신설
	에코응용화학전공	**이학사**	
	간호학과	이학사	
	스포츠건강과학과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보건경영학과	보건경영학사	
AI융합대학	**스마트모빌리티전공**	**공학사**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AI빅데이터전공	**공학사**	
	전자공학과	공학사	
	스마트융합보안학과	공학사	

간 서 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단과대학	학과(부)	학위명	비고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공학사	
	화학공학전공	공학사	
	건축학전공	공학사	신설
	건축공학과	공학사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공학사	신설
	스마트시티전공	공학사	
	환경에너지공학전공	공학사	
	토목공학전공	공학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데이터경영산업공학과	공학사	
	반도체융합공학과	공학사	신설
	IT기계공학과	공학사	
상생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	창의융합학사	신설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야)	문학사	
	실버복지상담학과(야)	문학사	신설
	스포츠융합경영학과(야)	이학사	신설
	드론산업학과(야)	공학사	신설
국제협력대학	한국학과	문학사	신설
	국제경영학과	경영학사	신설
융합전공	캐릭터·아트상품 융합전공	미술학사	
	K-문화콘텐츠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휴먼케어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게임·콘텐츠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스마트가구 · 패션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신설
	지식재산창업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신설
	리빙홈테크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반도체공학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지식재산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전기차핵심기술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스마트시티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통일한국인재전공	창의융합학사	
	창업융합전공	창의융합학사	

간 서 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별지서식 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다음 학위를 수여합니다.

전　　공 : ○○○학(○○학사)

○○○학(○○학사)

○○○학(○○학사)

부 전 공 : ○○학

<u>**마이크로전공 : ○○전공**</u>

20　년　월　일

대진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번호 : 대진대2000(학)0000

간 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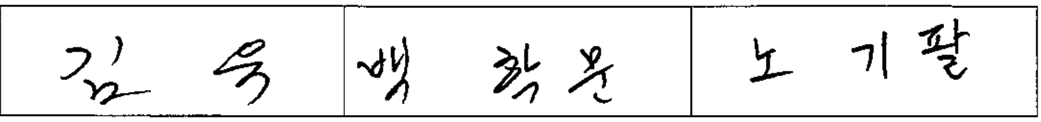

학칙시행세칙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편성원칙)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2025.03.01.>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공필수과목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5.03.01.>

3. 학과별 전공과목은 **93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학과의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편성학점을 조정할 수 있음 <개정 2025.03.01.>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양과목의 이수) ① 교양과목의 총 취득학점은 교양필수 13학점을 포함하여 **3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최대 **5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전공과목의 이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크로스리스팅, Cross-listing) 학과(전공)에서 편성한 교육 내용과 유사한 교과목의 경우 타 학과 교과목이더라도 학과 지정 시 6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제27조(교육과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 **2021~2024학년도** <개정 2025.03.01.>

7. 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 2025학년도 이후 <신설 2025.03.01.>

③ ~ ⑥ 현행과 같음

간 서 명	김 [illegible]	백 [illegible]	노 기 [illegible]

제32조(이수신청 및 변경)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이후부터 주 · 야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 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의 부전공신청은 할 수 없다.** <개정 2025.03.01.>

② (현행과 같음)

③ 융합전공과정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과정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5.03.01.>

제33조(학점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부전공의 교육과정에서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선택범위)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1개 이상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주·야간 복수전공도 허용한다. **다만 간호학과를 포함한 특수목적 학과와 총장이 정한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03.01.>

제37조(연계전공, 융합전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융합전공은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학과와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6학점까지 중복하여 학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③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주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1.>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자기설계전공)** ① **자기설계전공**은 기존에 개설된 전공 및 연계전공, 융합전공 외에 학생이 전공 교육과정을 직접 구성하고 교육혁신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② **자기설계전공**의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45학점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수학점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5.03.01.>

③ 마이크로전공을 3개 이상 이수한 경우 자기설계전공을 통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④ 삭제 <2025.03.01.>

제41조(이수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전공이나 복수전공의 교육과정에서 **6학점까지 중복하여 학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수강신

간 서 명	김 숙	백 학 문	노 기 팔

청 기일 이전에 **교육혁신처** 학사팀에서 수강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은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해당 사항을 교육혁신처 학사팀에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3.01.>

②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취득성적의 포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취득성적의 포기신청은 재학생에 한해 졸업 학기에 6학점 이내로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제65조(폐강)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교양과목은 20명(야간:10명)미만,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에만**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제69조(출석부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의 출석상황은 학기 말에 파악하여 성적에 반영하며, 성적평가가 종료된 출석부는 각 대학에서 **10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5.03.01.>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졸업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졸업학점의 교양학점은 34학점 이상 42학점 이하, 전공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전공 : 소속전공(제1전공) 42학점 및 복수전공(제2전공) 36학점 이상 취득

2. 부전공 : 소속전공(제1전공) 60학점 및 부전공 21학점 이상 취득

3. 마이크로전공 : 소속전공(제1전공) 60학점 및 마이크로전공 12학점 이상 취득

4. 심화전공 : 소속전공(제1전공) 72학점 이상취득

[전문개정 2025.03.01.]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졸업학점의 총 취득학점은 12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간호학과 및 특수목적학과(성인학습자 전형학과 등)의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제98조(휴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여학생은 임신(임신진단서) · 출산(자녀출생증명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육아** 및 이와 관련된 사유로 2년(4학기)간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순	노 기 팔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07조(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공자율선택제 학부(과)는 2학년 이후부터 전출을 허용할 수 있으나 타 학과생의 전입은 할 수 없다. <신설 2025.03.01.>

제116조(제 증명서 교부)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수료예정증명서 <신설 2025.03.01.>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제23조, 제92조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① (교양과목의 이수) 제23조 ①항과 관련하여 2021~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는 교양필수 13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46학점 이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참여학과의 재학생은 최대 5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졸업의 기준) 제92조 ②항과 관련하여 2021~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의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간 서 명	김 욱	백 학 윤	노 기 팔

규정류 관리규정

규정류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정 및 개폐)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관부서의 검토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써 확정한다.

②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주관부서의 검토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써 확정한다.

③ 인사, 직제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주관부서의 검토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법인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진행되는 규정은 법인 이사장의 결재로써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5.02.07.]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간 서 명	김 ○	백 ○ ○	노 기 ○

교직원 보수 규정

교직원 보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보직수당) ① 교직원이 보직에 임명 되었을 때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02.07.>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한 경우에는 고액의 보직수당만을 지급한다. <신설 2025.02.07.>

제14조의 3(겸직수당) ①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때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07.10.08. 신설> <개정 2025.02.07.>

② 2개 이상 겸임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지급한다. <신설 2025.02.07.>

제18조의 5 삭제 <2025.02.07.>

제18조의 8(육아휴직수당)<2021.04.28. 조 신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관 제37조 ①항 7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준용하고, 직원인사규정 제40조 7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2.07.>

제18조의 9(급량보조비) 급량보조비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0(특별연구비) 특별연구비는 대진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이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1(출납수당) 출납수당은 재무팀 직원에 한해 지급되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2(기술수당) 기술수당은 해당직무 자격증소지자에게 지급되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3(근속수당) 근속수당은 학교법인대진대학교 및 산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지급되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4(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운	노 기 팔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5(특수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파워플랜트 및 건물관리를 위해 주말 또는 휴일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6(학생지도비) 학생지도비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책임지도교수 상담 지도, 외국인 유학생 지도, 글쓰기 클리닉 지도, 학생지도 등이 있으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7(교통보조비) 교직원에게 이동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2.07.]

제18조의 18(기타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추석, 설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2. (성과수당) 성과수당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제안제도 포상, 대학발전유공자 표창, 기부금품모집 포상, 개교기념 포상, 인센티브, 우수교원 포상 등
3. (당직수당) 시험기간 자유열람실 당직, 수위실 근무, 시설물 대관 등에 따른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법정수당)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5. (교내학술연구비) 매 학년도 선정된 국내/외 지원 과제(논문/저서/특허 등)에 대한 지원비
6. (회의수당) 각종 자문료, 회의비, 심사비 등
7. (위원수당) 각종 위원회 및 TF팀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8. (유류비) 교직원이 업무상으로 인해 개인차량을 상시운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9. (감독수당) 학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논문제출자격시험, 졸업시험 등)에 대한 감독수당
10. (강의개발비) 중·대형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개발·운영에 참여한 교강사에게 강의 교안 자료 제공,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강의운영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11. (보육수당) 만0세~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12. (근로자의날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13. (기타연구비) 각종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본조신설 2025.02.07.]

제19조(강사료) ①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2.07.>

② 강사료는 초과강의료, 강사료,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강의료 등이 있다. 강의(교육)를 진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간 서 명	김 욱	백 함 운	노 기 팔

2025.02.07.>

제21조(퇴직금) **"퇴직금"이라 함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정년퇴직자 축하금 등을 말한다.**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07.>

제23조**(세부사항)** <조명 변경 2025.02.07.>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운	노 기 팔

교직원복무 규정

교직원복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청가) ①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청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02.23.>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사망	배우자	7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처)	20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의 출산 (다태아)	90 (120)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1
가족돌봄휴가	본인	10 (무급)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②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청가는 **3회**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02.23.>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간 서 명	김 [illegible]	백 [illegible]	노 기 팔

규정 폐지

전략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폐지)

1. (시행일) 전략성과지표관리위원회 규정은 2025년 02월 07일부터 폐지한다.

간 서 명	김 [illegible]	백 [illegible]	노 기팔

청렴자문위원회 규정(폐지)

1. (시행일) 청렴자문위원회 규정은 2025년 02월 07일부터 폐지한다.

간 서 명	김 웅	백 학 문	노 기 팔

대진대학교 2025.04.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 임용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교육대학원	장		2025.04.01. ~ 정년
국제학부	최		
스포츠건강과학과	안		

- 이상 3명 -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윤	노 기 팔

대진대학교 2025.03.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재임용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산학협력단	정		2025.03.01. ~ 2027.02.28

- 이상 1명 -

면직

소 속	성명	생년월일	면직일
창업센터	박		2025.03.01

- 이상 1명 -

간 서 명	김 숙	백 학 운	노 기 팔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면직자

보직명	성명	직위	소속	면직일자
대학원장	정	교수		2025.02.28
교육대학원장				
공공정책대학원장	정	교수		
통일대학원장				
DNA플러스융합기술전문대학원장	김	교수		
대순종학대학장 직무대리	치	조교수		
인문예술대학장	최	교수		
공공인재대학장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채	교수		
IT융합대학장	손	교수		
공과대학장				
상생교양대학장	윤	교수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장	최	교수		
교육혁신처장	윤	교수		
기획처장	김	교수		
학생성공처장	장	부교수		
입학홍보처장	정	교수		
중앙도서관장	유	교수		
산학협력단장	배	교수		

– 이상 15명 –

간서명	김 욱	백 학 문	노 기 팔

임명자

보직명	성명	직위	소속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대학원장					
공공정책대학원장	김	교수		2025.03.01	2027.02.28
DNA플러스융합 기술전문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윤	교수		2025.03.01	2027.02.28
통일대학원장					
대순종학대학장 직무대리	차	조교수		2025.03.01	2027.02.28
인문예술대학장	정	교수		2025.03.01	2027.02.28
공공인재대학장	김	교수		2025.03.01	2027.02.28
글로벌산업통상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채	교수		2025.03.01	2027.02.28
AI융합대학장	손	교수		2025.03.01	2026.02.28
공과대학장					
상생교양대학장	심	교수		2025.03.01	2027.02.28
미래평생교육융합대학장	한	부교수		2025.03.01	2027.02.28
교육혁신처장	곽	교수		2025.03.01	2027.02.28
기획처장	류	교수		2025.03.01	2027.02.28
학생성공처장	정	부교수		2025.03.01	2027.02.28
입학홍보처장	김	부교수		2025.03.01	2027.02.28
중앙도서관장	김	교수		2025.03.01	2027.02.28
산학협력단장	정	교수		2025.03.01	2027.02.28

– 이상 15명 –

간서명	김 숙	백 학문	노 기갈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정년퇴직 · 명예퇴직)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과목	퇴직일
대진고등학교	김		한문	2025.02.28
대진고등학교	이		정보컴퓨터	
대진고등학교	이		일반사회	
대진고등학교	민		국어	
대진여자고등학교	김		진로진학상담	
대진여자고등학교	이		수학	
대진여자고등학교	오		역사	
대진여자고등학교	김		정보컴퓨터	
분당대진고등학교	이		정보컴퓨터	
분당대진고등학교	송		수학	
분당대진고등학교	김		진로진학상담	
일산대진고등학교	김		국어	
일산대진고등학교	노	1	영어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박	1	영어	
대진디자인고등학교	김	1	국어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남	1	국어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김	1	화학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장	1	수학	

– 이 상 18명 –

간서명	김 ○	백 ○ ○	노 기 팔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임용 계획

분당대진고등학교

소속	임용직급	직렬	담당업무	인원	임용예정일
분당대진 고등학교	일반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직렬 업무 전반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1	2025.05.01

일산대진고등학교

소속	임용직급	직렬	담당업무	인원	임용예정일
일산대진 고등학교	일반직 9급	시설관리	시설관리 직렬 업무 전반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1	2025.05.01

– 이 상 –

간서명	김 욱	백 학 운	노 기 팔